

# 기금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기금운영의 특성 분석

김태일\*

## 1.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이루어진 기금평가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기금운영의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기금운영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예산회계법 제7조는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기금의 특징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운용주체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중앙예산기관(기획예산처 예산실)과 국회의 엄격한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지만,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예산기관이나 국회의 통제보다는 기금운용 주체인 주무부처의 재량을 우선시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1963년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의 도입으로 출발한 기금은 그 이후, 기금의 수와 규모(운용 및 조성액) 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이 곤란한 사업 운영을 통하여 기금은 국민경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각 부처가 기금이 지닌 통제의 취약성을 이용하기 위하여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다양한 사업을 벌임으로써 방만한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그 동안 학자들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기금의 무절제한 설립과 운영으로 인하여 예산운영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예. 박기백, 2002; 황윤원·기노진, 1999; 문인수, 1998; 황성현외, 1998; 박종구, 1992; 유시권, 1991; 장원중, 1989; 박태규, 1989 등).

정부에서도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중앙예산기관인 기획예산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두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먼저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매년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에 의한 기금평가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기금의 무분별한 설립을 억제하고 예산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에 대해서도

\*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예산과 동등한 정도의 재정규율을 적용하기 위해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도록 한 것으로서 금년부터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획예산처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실시한 기금평가의 3년간 평가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기금운영의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기금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절에서는 우리나라 기금의 운용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제 III절에서는 기금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며, 제 IV절에서는 분석결과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 II. 기금과 기금평가의 현황

### 1. 기금의 현황

<표 1>에는 기금 수의 연도별 변천이 제시되어 있다. 1963년에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이 처음 설치된 이후 기금의 수는 1990년대 중반까지 계속 증가해 왔다. 1991년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이전까지 확장 일변도였던 기금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는 기금의 총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3월 현재, 기금의 총수는 55개이다. 가장 많은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부처는 재정경제부로서 11개의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문화관광부와 노동부가 각각 5개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기금내역은 부록1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기금의 연도별 운용규모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2002년을 기준으로 할 때, 기금의 총 운용 규모는 약 191조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보다 훨씬 규모가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기금의 규모는 2000년을 피크로 2001년부터는 약간씩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sup>

<표 1> 연도별 기금의 수

	1961	1980	1993	1999	2001	2002	2003
기금 수	3	45	114	75	61	53	55

1) 2000년대의 기금규모 증가에는 국민연금 등 연금성 기금 규모의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연금성 기금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기금 규모 감소 추세는 더 뚜렷해진다.

<표 2> 연도별 기금 규모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운영규모	4.3	8.4	25.0	56.5	220.9	216.8	190.9

## 2. 기금평가의 현황

### 1) 목적 및 평가단의 조직

기금평가의 목적은 기금운용의 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과 국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기금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데 있다(기금편람, 2001). 기금평가의 근거는 1999년 12월 18일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이다.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2 및 제12조는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정책심의회」와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기금이 국가재정정책 방향에 따라 운용되도록 기금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금평가를 위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의 위촉에 의해 구성되는 기금평가단은 30명 내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금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 또한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연구 및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 2) 평가지표체계

2000년에 처음 평가가 실시된 이후 평가지표는 매년 조금씩 수정되어 왔다. 각 연도별 평가지표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연도별 평가지표

2000년		2001년		2002년	
항목	세부항목	항목	세부항목	항목	세부항목
종합 부문	- 기금의 필요성 - 기금의 안정성 - 기금의 경영개선 노력	종합 관리 부문	- 기금조성 및 운용의 설치목적 부합도 - 기금의 경영개선 노력	경영 개선 부문	-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 경영혁신 및 성과관리 노 력 - 의사결정체계와 관리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사업 운영 부문	- 사업선정의 타당성 - 사업운영의 적정성 - 사업목적의 달성도 - 사업간 자원배분의 적 정성	사업 운영 부문	- 전년도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 기금운용계획 대비 집행실적 - 사업의 차별성 - 사업운영의 적절성 - 사업운영이 성과 및 달성도 - 사업간 자원배분의 적정성	사업 운영 부문	- 기금운용계획 대비 집행 실적 -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성 과 - 사업간 자원배분의 적정 성
관리 조직 부문	가. 기금운용 의사결정 체계 - 의사결정의 투명성 -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나. 기금관리조직의 효 율성 - 관리조직의 전문성 - 관리조직의 합리성				
자산 운용 부문	가. 단기자금 운용의 적 정성 - 단기자금 운용정책의 적정성 - 단기자금 운용의 효 율성 나. 자산운용의 적정성 - 자산운용 계획수립의 적정성 - 자산운용의 효율성 - 자산운용 성과 평가	자산 운용 부문	- 전년도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 자산운용실적 - 단기자금 운용의 적정 성 - 기금자산 운용의 적정 성	자산 운용 부문	- 자산운용 실적 - 기금자산 운용정책의 적정성 - 기금자산 운용의 효율성

자료: 기금운용평가단(2000, 2001, 2002).

평가 첫 해인 2000년에는 종합부문, 사업운영부문, 관리조직부문, 자산운영부문의 네 부  
문으로 구분하여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2001년에는 종합관리부문, 사업운영부문, 자산운영  
부문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2년에는 경영개선부문, 사업

운영부문, 자산운영부문의 세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sup>2)</sup> 평가는 각 영역별로 이루어지는데 영역별 평가등급 및 기준, 그리고 배점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평가등급별 기준 및 배점

등급	기 준	배점
A	운영 성과가 우수하고 기금 설립목적과 평가지표가 지향하는 목표의 달성에 현저하게 기여하여 타 기금 및 정부업무 수행에 모범이 되는 실적에 대해 부여함	100
B	가시적인 운영 성과와 개선 노력이 인정되고, 기금 설립목적과 평가지표가 지향하는 목표의 달성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실적에 대해 부여함	90
C	통상적인 업무 수행 결과로서, 기금 운영 주체의 역량으로 보아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에 대해 부여함	80
D	운영 성과가 통상적인 기대 수준에 미흡하여, 추가적 노력이 요구되는 실적에 대해 부여함	70
E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업무 수행의 결과로서, 기금 설립목적과 평가지표가 지향하는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한 실적에 대해 부여함	60
F	성과가 현저하게 부진하여, 평가지표가 지향하는 목표의 달성에 실패한 결과에 대해 부여함	50

자료: 기금운용평가단(2002).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실적, 즉 보통인 경우에 C등급이 부여되며, 이보다 잘 했을 경우에 A, B가 부여되고 못했을 경우에 D, E, F가 부여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3년간의 평가 중에서 A등급이 부여되거나 F등급이 부여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sup>3)</sup> 그리고 각 등급의 중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는 -가 붙는 등급을 부여할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B등급과 C등급의 중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B-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점수를 부여받은 각 평가지표에는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중치에 따라 합산한 점수가 부문별 점수로 환산된다. 가중치는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이며, 기금의 유형에 따라서도 약간씩 달라진다.<sup>4)</sup>

2) 2003년도의 평가체계는 2002년과 동일하게 경영개선부문, 사업운영부문, 자산운영부문의 세 부문으로 이루어졌지만, 각 영역별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약간 변경되었다.

3) 각 연도(3) 전체 기금(45개 내외), 모든 지표(12개 내외) 중에서 A- 등급이 부여된 경우는 몇 번 있었다. 즉 3×45×10개의 평가 중에서 5회 미만이었다.

4) 2002년 기금별 가중치는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 Ⅲ. 기금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

#### 1. 분석 방법 개괄

본 절에서는 2000, 2001, 2002년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 기금평가 결과자료를 이용하여, 각 기금의 연도별 및 부문별 평가점수는 어떤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평가점수와 기금의 특성간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분석한다. 평가점수 사이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서는 상관분석을, 평가점수와 기금 특성간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전술하였듯이 기금평가체계는 평가 첫 해인 2000년에는 종합/사업운영/관리조직/자산운영의 네 부문으로 구성되었는데, 두 번째 해인 2001년에는 종합/사업운영/자산운영의 세 부문으로 변경되었으며, 세 번째 해인 2002년에는 경영개선/사업운영/자산운영의 세 부문으로 변경되어 있다. 이렇게 연도에 따라 네 부문, 또는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은 평가의 내용에 따라 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광의의 사업운영에 대한 것으로서 이에선 종합, 사업운영, 관리조직, 경영개선부문이 포함되며, 다른 하나는 자산운영에 대한 것으로서 자산운영부문이 포함된다.<sup>5)</sup> 따라서 평가점수 간의 상관분석 또는 기금특성과 평가점수의 회귀분석에서 평가점수는 광의의 사업운영과 자산운영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평가점수와 기금 특성 간의 회귀분석에서는 물론 평가점수가 종속변수, 기금특성이 독립변수가 된다. 그렇다면 독립변수에 포함되는 기금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평가점수에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는 기금특성으로는 기금의 운용규모를 들 수 있다. 이는 기금 규모에 따라 기금관리 실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금 규모가 커질 경우 운용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므로 규모가 영세한 기금에 비하여 기금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금 규모가 작을 때에는 세세한 분야에까지 관리가 가능하지만 규모가 커질 때에는 이러한 세부적인 관리가 곤란해져 기금관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금 규모에 따른 기금관리의 효율성은 실증적 문제이지 이론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기금운용 규모에 대한 변수로는 기금운용액과 기금조성액을 합한 것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사용한다.

- 5) 이와 같이 평가체계를 광의의 사업운영부문과 자산운영부문으로 구분하는 경우 연도에 따라 두 부문간에 세부 평가 항목의 이동이 다소 발생한다. 즉 2000년과 2001년도 종합부문 평가에는 자산운영에 대한 평가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종합부문을 광의의 사업운영부문에 포함시키는 경우 자산운영에 대한 평가가 일부 포함된다. 그리고 2002년도 경영개선의 세항목에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선 전년도 자산운영 평가 지적사항의 반영도 포함된다. 따라서 2002년도 경영개선을 광의의 사업운영부문에 포함시키는 경우 자산운영에 대한 평가가 일부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금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에는 기금의 성격(또는 설치 목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비슷한 성격(또는 설치목적)을 가진 기금들은 관리나 운영에서도 비슷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에서는 기금들을 성격에 따라 사업성 기금, 연금성 기금, 금융성 기금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사업성 기금은 연금 및 금융성 기금과는 기금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사업성 기금에 대한 가변수를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나머지 기금과 구분하기로 한다.

한편 기금관리 주체의 성격도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금관리를 부처소속의 공무원이 담당하느냐 아니면 별도의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느냐가 관리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Karpoff(2001)는 북극탐험 기지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같은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민간이 공공부문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sup>6)</sup> 본 연구에서는 기금의 위탁관리 여부에 대한 가변수를 포함하여 이러한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sup>7)</sup>

마지막으로 각 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수도 기금운영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운영하는 사업의 개수가 많을수록 각 사업의 성과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므로 효율성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각 기금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수를 독립변수로 포함하는데 그 형태는 자연로그를 취한 것을 사용한다.<sup>8)</sup>

이상의 논의에 따라 회귀분석에 적용되는 변수들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한편 각 기금들이 구체적으로 운영주체와 설치목적에 따라 어디에 포함되는가는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6) Karpoff Jonathan M., "Public versus Private Initiative in Arctic Exploration: The Effects of Incentive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9(1): 38-78, 2001.

7) 이 밖에 기금의 소속부처도 독립변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진의 판단으로는 소속부처를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중회귀모형에서 개별 독립변수의 효과는 다른 독립변수의 효과가 통제된 상태에서 해당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보여 준다. 따라서 독립변수로 소속부처를 포함하면, 다른 독립변수들의 효과는 소속부처의 차이가 통제된 상태에서 기금간 점수 차이에 미치는 영향력,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일한 부처 내에서 기금간 점수 차이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낸다. 그런데 부록1에 제시하였듯이 하나의 부처에서 하나의 기금만 운용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이 경우는 동일한 부처 내에 하나의 기금만 존재하므로, 기금간 점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은 계수값에 반영되지 않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일한 부처 내에서 운영하는 기금끼리 왜 차이가 있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속부처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진은 소속부처에 따라 기금 점수가 다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는데 P값은 전혀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독립변수의 계수값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소속부처가 독립변수로 포함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8) 기금규모나 사업 수 자체를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대신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사용하는 것은 물론 기금규모, 사업 수의 절대값 증가가 평가점수에 선형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 보다는 상대적인 비율의 증가가 평가점수에 선형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표 4>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설명

변수명		설명
종속변수		각각 사업점수와 자산점수의 표준화값
독립변수	규모	(기금운영액+기금조성액)의 자연로그값
	운영주체	부처운영이면 1, 위탁운영이면 0
	설치목적	사업성이면 1, 아니면 0
	사업 수	운영하는 사업 수의 자연로그값

## 2. 부문별·연도별 평가점수의 상관관계

<표 5>에는 평가부문별·연도별 평가점수의 상관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사업은 광의의 사업운영부문의 점수를 의미하며, 자산은 자산운영부문의 점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각 변수의 뒤에 붙은 숫자의 경우 00은 2000년도 평가, 01은 2001년도 평가, 02는 2002년도 평가를 의미한다. 보는 데 편리하도록 동일 부문 내 연도별 상관관계는 굵은 글씨로 나타냈으며, 동일 연도 내 부문별 상관관계는 이탤릭체로 나타냈다.

<표 5> 부문별·연도별 평가점수의 상관관계

	사업00	사업01	사업02	자산00	자산01	자산02
사업00	1.000					
사업01	<b>0.554</b>	1.000				
사업02	<b>0.612</b>	<b>0.716</b>	1.000			
자산00	<i>0.303</i>	<i>0.044</i>	<i>0.193</i>	1.000		
자산01	<i>0.162</i>	<i>-0.089</i>	<i>0.074</i>	<b>0.323</b>	1.000	
자산02	<i>0.461</i>	<i>0.439</i>	<i>0.576</i>	<b>0.390</b>	<b>0.461</b>	1.000

먼저 동일 부문 내 연도 간 상관관계를 보면 사업운영 부문 내 상관관계가 자산운영 부문 내 상관관계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산운영의 재량 범위(변화의 여지)가 사업운영의 재량 범위보다 더 크기 때문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사업운영 부문의 경우 둘 또는 세 개 항목의 점수가 합쳐짐에 따라 각 항목의 무작위 오차들이 서로 상쇄되어, 좀 더 안정적인 변화를 보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편 사업부문과 자산부문 모두 2002년과 2001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고, 다음이 2002년과 2000년이며, 2001년과 2000년의 상관관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진 연도인 2001년과 2000년에 비하여 한 해 간격을 둔 2002년과 2001년 사이의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온 것은 흥미있는 일이지만 그 이유는 알기 어렵다.

한편 동일 연도에서 부문 간 상관관계를 보면 2000년과 2002년도의 경우에는 양의 관계가 있고 그 정도가 2002년도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하여, 2001년도의 경우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공이 있다면 역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과 2002년도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온 데 비하여 그 사이에 있는 2001년도의 결과만 전혀 다르게 나온 이유는 본 연구진으로서도 알기 어렵다.

<표 5>에서는 전체기금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도별·부문별 상관관계는 기금의 특성 중 사업성 기금인가 금융/연금성 기금인가에 따라 결과가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사업성 기금인가 금융/연금성 기금인가에 따라 사업부문과 자산부문의 운영 패턴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표 6>과 <표 7>에서는 각각 사업성 기금과 금융/연금성 기금을 분리하여 연도별·부문별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표 6> 부문별·연도별 평가점수의 상관관계 - 사업성 기금(31개)

	사업00	사업01	사업02	자산00	자산01	자산02
사업00	1.000					
사업01	0.536	1.000				
사업02	0.582	0.586	1.000			
자산00	0.077	0.013	0.241	1.000		
자산01	0.057	-0.077	0.034	0.221	1.000	
자산02	0.408	0.391	0.551	0.339	0.412	1.000

<표 7> 부문별·연도별 평가점수의 상관관계 - 연금/금융성 기금(13개)

	사업00	사업01	사업02	자산00	자산01	자산02
사업00	1.000					
사업01	0.535	1.000				
사업02	0.607	0.879	1.000			
자산00	0.693	0.089	0.125	1.000		
자산01	0.613	0.410	0.526	0.570	1.000	
자산02	0.494	0.401	0.545	0.488	0.863	1.000

<표 6>과 <표 7>의 결과는 기금특성(사업성 vs. 연금/금융성)에 따라 부문별·연도별 평가점수 상관관계 패턴이 다를 것을 보여 준다.

먼저 동일부문 내 연도 간 상관계수를 보면, 연금/금융성 기금이 상관계수가 사업성 기금에 비하여 대체로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업부문에 비하여 자산부문에서 그런 경향이 더 두드러져서, 자산부문 2002년과 2001년 및 2001년과 2000년의 상관계수는 연금/

금융성의 경우가 사업성에 비하여 두 배 이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동일연도 내 부문 간 상관계수를 보면 2002년의 경우는 사업성 기금과 연금/금융성 기금의 결과가 유사하지만, 2001년과 2000년의 경우는 두 기금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연금/금융성 기금은 2001년과 2000년 모두 제법 큰 양의 값을 취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사업성 기금은 2001년과 2000년 모두 계수값이 작으며, 2001년은 음, 2000년은 양의 값을 취하고 있다.<sup>9)</sup>

<표 6>과 <표 7>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금융성 기금은 각 기금 간 운영성과의 연도별 변화가 적는데 비하여, 사업성 기금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크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사업부문보다 자산부문에 더 두드러진다.

둘째, 연금/금융성 기금은 사업부문과 자산부문 운영성과의 양의 상관관계가 높다. 이에 비하여 사업성 기금은 평가의 첫 두 해(2000, 2001)에는 두 부문 성과 간에 관계가 없었으나, 평가의 세 번째 해(2002)에는 뚜렷한 양의 관계를 보여 준다.<sup>10)</sup>

## 2. 회귀분석

이번에는 기금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 8>에는 각 부문별 평가점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평가 점수는 연도에 따라 평균값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연도별로 표준화된 점수를 사용하였다.<sup>11)</sup> 괄호안의 수치는 P값을 나타낸다. 한편 회귀분석 결과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본문단의 각주로 제시하였다.<sup>12)</sup> 각주12의 상관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설치목적과 사업 수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사업성 기금의 사업 수가 연금/금융성 기금의 사업

9) 특이한 것은 사업성 기금의 경우 동일 연도인 2000년의 사업과 자산부문 점수 사이의 상관계수보다 다른 연도인 2000년 사업과 2002년의 자산부문, 2000년 자산과 2002년 사업부문의 상관계수가 더 크다. 또한 동일 연도인 2001년의 사업과 자산부문 점수 사이의 상관계수보다 다른 연도인 2001년 사업과 2002년 자산부문 점수 사이의 상관계수가 더 크다. 흥미 있는 현상이지만 그 이유는 알기 어렵다.

10) 물론 이러한 해석은 평가 자체는 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다.

11) 따라서 당연히 연도별 점수 차이를 반영하는 연도 가변수는 독립변수로 포함될 필요가 없다.

12) 회귀분석에 포함되는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사업점수	자산점수	기금규모	설치목적	운영주체	사업 수
사업점수	1.000					
자산점수	0.284	1.000				
기금규모	0.378	0.043	1.000			
설치목적	-0.345	0.021	-0.442	1.000		
운영주체	-0.394	-0.172	-0.208	0.148	1.000	
사업 수	-0.283	0.163	-0.043	0.623	-0.014	1.000

수에 비하여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금의 설치목적 상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설치목적과 사업 수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회귀분석에서는 사업 수 변수를 제외하고 설치목적 변수만을 포함한 것과 사업 수와 설치목적 변수를 모두 포함한 것을 각각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사업 수 변수를 포함한 것과 제외한 것을 각각 분석하는 것은 설치목적에 따라서 평가점수가 달라지는 이유가 사업 수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표 8> 사업부문과 자산부문 평가점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사업부문		자산부문	
	기금규모	0.101(0.009)	0.136(0.001)	0.015(0.732)
운영주체	-0.631(0.000)	-0.669(0.000)	-0.344(0.051)	-0.313(0.073)
설치목적	-0.426(0.018)	0.029(0.902)	0.130(0.528)	-0.237(0.391)
사업 수	-	-0.230(0.005)	-	0.186(0.050)
상수항	-0.399(0.386)	-0.672(0.139)	-0.075(0.887)	0.152(0.774)
R <sup>2</sup>	0.279	0.322	0.033	0.061
자료 수	135			

먼저 기금규모 변수를 보면 사업부문은 기금규모가 증가할수록 평가점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산부문은 기금규모와 평가점수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운영주체 변수를 보면 사업부문과 자산부문 모두 위탁운영이 직접운영에 비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이런 경향은 사업부문에서 더욱 뚜렷함을 알 수 있다.<sup>13)</sup> 누가 운영하는가에 따라 평가점수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는 위탁운영이 직접운영에 비하여 효율성이 높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기금의 설치목적 변수를 보면 자산부문의 경우는 유의미하지 않으며, 사업부문의 경우 사업수 변수가 제외되어 있는 경우만 유의미하여, 사업성 기금이 연금/금융성 기금에 비하여 평가점수가 낮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 수 변수가 포함될 경우 설치목적 변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전술한 대로 두 변수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업 수 변수를 제외한 것과 포함한 것의 설치목적 변수 계수값을 비교하면, 결국 설치목적에 따라 평가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업성 기금과 연금/금융성 기금의 사업 수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에서는 운영주체와 설치목적 변수가 독립변수로서 포함되어 각각이 평가점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런데 이들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가법적

13) 자산부문 운영주체 변수 계수값은 통상적인 유의수준이 0.05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으며, 0.1에서만 유의미하다.

(additive)이 아니라면(즉, 교호작용이 존재한다면) 운영주체에 따라서 설치목적 변수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설치목적에 따라서 운영주체 변수의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독립변수 간 교호작용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운영주체별, 설치목적별로 세분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는 <표 9>와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9> 운영주체별 회귀분석결과

	사업부문		자산부문	
	위탁운영	직접운영	위탁운영	직접운영
기금규모	0.143(0.016)	0.170(0.002)	0.072(0.307)	-0.020(0.744)
설치목적	-0.039(0.895)	0.300(0.409)	-0.325(0.364)	0.219(0.594)
사업 수	-0.363(0.001)	-0.037(0.764)	0.039(0.752)	0.342(0.019)
상수항	-0.486(0.444)	-2.152(0.001)	-0.423(0.581)	-0.687(0.340)
R <sup>2</sup>	0.365	0.161	0.064	0.179
표본 수	72	63	72	63

<표 9>를 보면 위탁운영인지 직접운영인지에 따라서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사업부문 점수는 위탁운영의 경우 기금규모가 클수록 점수가 높은 반면에, 사업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직접운영의 경우는 사업 수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기금규모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서 규모가 클수록 평가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산부문 점수는 위탁운영의 경우는 기금규모, 설치목적, 사업 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직접운영의 경우 사업 수가 많을수록 평가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설치목적별 회귀분석결과

	사업부문		자산부문	
	사업성	연금/금융성	사업성	연금/금융성
규모	0.166(0.001)	0.104(0.122)	0.042(0.427)	-0.096(0.253)
운영주체	-0.419(0.025)	-1.205(0.000)	0.066(0.747)	-1.114(0.001)
사업 수	-0.254(0.008)	-0.120(0.422)	0.121(0.243)	0.452(0.020)
상수항	-0.985(0.033)	-0.161(0.823)	-0.647(0.204)	1.243(0.176)
R <sup>2</sup>	0.207	0.425	0.031	0.363
표본 수	93	42	93	42

<표 10>을 보면 기금의 설치목적이 사업성인지 연금/금융성인지에 따라서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먼저 사업부문 점수를 보면 연금/금융성 기금의 경우는 운영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점수 차이가 커서, 위탁운영의 경우가 직접운영의 경우에 비

하여 점수가 크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사업성 기금의 경우도 사업성 기금보다는 차이가 작지만 위탁운영의 경우가 직접운영의 경우에 비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으며, 기금규모가 클수록 평가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사업 수 변수의 경우 연금/금융성 기금의 경우는 유의미하지 않고 사업성 기금의 경우만 유의미하다. 즉 동일한 설치목적 하에서는 사업성 기금의 경우에만 사업 수에 따른 유의미한 평가 점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산부문을 보면 사업성 기금의 경우는 규모, 운영주체, 사업 수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연금/금융성 기금은 운영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점수 차이가 커서, 위탁운영의 경우가 직접운영의 경우에 비하여 점수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 수가 많을수록 평가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음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부문의 경우 대체로 연금/금융성 기금의 평가점수가 사업성 기금보다 높다. 그런데 이는 사업 수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며, 사업 수 차이를 통제하면 사업성 기금과 연금/금융성 기금의 평가점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

둘째, 위탁운영이 직접운영에 비하여 평가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특히 사업 부문에서, 그리고 연금/금융성 기금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셋째, 사업부문의 경우 대체로 규모가 큰 기금의 평가점수가 높다. 이러한 경향은 직접 운영의 경우와 사업성 기금의 경우 특히 두드러진다.

넷째, 사업부문의 경우 사업 수가 많을수록 평가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하여 자산부문의 경우는 사업 수가 많은 경우 평가점수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특히 직접 운영 및 연금/금융성 기금의 경우).

## IV. 기금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앞 절에서 이루어진 기금평가결과 분석의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금융성 기금의 사업부문 평가점수가 사업성 기금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것은 사업성 기금의 경우 연금/금융성 기금에 비하여 방만한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즉 사업 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연금/금융성 기금의 경우는 대체로 사업 목적이 뚜렷하며, 기본사업인 연금이나 금융사업 이외에 수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은 수도 적고 규모도 작다. 이에 비하여 사업성 기금의 경우 사업목적이 상대적으로 모호하며,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수도 매우 많다.<sup>14)</sup> 사업성 기금의 운영사업은 대부분이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나 용자 지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기금사업 수혜집단의 영향이 있기 마련인데, 이로 인하여 방만한 사업운영의 정비가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연금/금융성 기금에 비하여 사업성 기금 운영성과의 연도별 변화가 크다는 것은 사업성 기금이 상대적으로 기금운영에서 재량의 여지가 많은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성 기금이 연금/금융성 기금에 비하여 평가점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운영에서 재량의 여지가 많다는 것은, 연금/금융성 기금에 비하여 사업성 기금은 경영 효율화의 여지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위탁운영이 직접운영에 비하여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특히 사업부문의 경우)은 위탁운영의 경우 직접운영에 비하여 전담인력이 많거나, 전문성이 높아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규모가 큰 기금의 사업부문 성과가 더 높은 것은 기금규모가 클수록 보다 운영인력이 많거나, 전문성 있는 인력의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직접운영의 경우에 기금규모가 클수록 성과가 더 높는데, 이는 위탁운영의 경우는 위탁을 통하여 이미 전문인력에 의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규모에 따른 운영성과의 차이는 많지 않겠지만 직접운영하는 경우에는 기금규모에 따라 기금업무의 중요성이 다를 것이므로, 전담인력의 수나 업무 관심도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운영성과의 차이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직접운영보다는 위탁운영의 성과가 높고, 직접운영의 경우에도 기금규모가 클수록 성과가 높은 이유가 전담인력의 수나 전문성의 차이에 기인한다면 결국 기금운영 성과의 향상을 위해서는 이의 운영을 전문성 있는 전담인력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이루어진 기금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이의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는 기금평가 결과로부터 기금운영의 특성을 해석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와는 별도로 그 동안 이루어진 기금평가가 기금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어렵다. 물론 기금평가점수의 연도별 변화가 기금운영 성과의 변화를 보여 준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진이 그 동안 평가에 참여한 경험에 의하면, 연도별로 평가점수의 기준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연도별 평가점수의 차이가 곧 연도별 성과 차이를 보여 준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A, B, C 등 각 등급 부여의 기준은 일정하지만 대체로 최근에 올수록 평가가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연도별로 평가점수가 상승했다고 해서 그만큼 기금성과가 향상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진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그 동안 이루어진 기금평가는 기금운영 성과

---

14) 예를 들면 정보화촉진기금이나 축산발전기금 등은 운영사업이 30개가 훨씬 넘는다.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평가단의 평가 보고서에는 개선할 점에 대한 권고가 포함되며 이의 반영 정도가 다음 해 평가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데, 평가단의 권고대로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를 제법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해가 지날수록 방만한 사업운영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성과 향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과연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서로의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기금평가가 없었다면 지금 수준의 성과 개선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평가에 참여한 대부분의 위원들이 수긍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와 같이 기금평가가 기금운영 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금년부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2002년말에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금년부터 기금에 대한 국회 통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기금주체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만 하면 되었지만 금년부터는 국회에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을 심의·의결하도록 변경되었다.<sup>15)</sup> 그리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기금평가단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전에는 기금평가 결과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나 국회감사의 자료로서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쳤으나, 금년부터는 국회 심의·의결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평가결과의 적극적 환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기금평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금년의 기금평가 방법도 이전에 비하여 강화되었다. 하나의 기금 평가에 참여하는 인원이 3인에서 5인으로 증가하였으며, 평가 대상도 기금 전체에서 기금의 하위사업별로 세분화되었다. 그리고 평가위원의 선정에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 방법의 강화는 예전에 비하여 기금평가를 충실하게 하며, 평가결과를 이용하는 국회, 기획예산처, 기금운영주체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5) 그 외에도 종전에는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2 범위내에서 기금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을 자율 변경할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3/10 이상의 계획변경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3/10 범위내의 변경도 필요한 경우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총사업비는 기획예산처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및 사업비의 단계적 반영을 의무화하였다.

## 참고문헌

- 국회경제과학위원회. 1996. 『기금관리기본법자료집』.
-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2000. 『2001년 기금현황』.
- 기획예산처. 1994. 『1994년 기금백서』.
- \_\_\_\_\_. 1995. 『1995년 기금백서』.
- \_\_\_\_\_. 1996. 『1996년 기금백서』.
- \_\_\_\_\_. 1997. 『1997년 기금백서』.
- \_\_\_\_\_. 1998. 『1998년 기금백서』.
- \_\_\_\_\_. 1999. 『1999년 기금백서』.
- \_\_\_\_\_. 2000. 『2000년 기금백서』.
- 기금평가단. 2000. 『기금평가편람』.
- \_\_\_\_\_. 2001. 『기금평가편람』.
- \_\_\_\_\_. 2002. 『기금평가편람』.
- 최광. 1991. “특별회계와 기금.” 『한국재정40년사』 7. 한국개발연구원.
- 문인수. 1998. “공공기금의 운용 실태 분석.” 『한국행정논집』 10: 301-323.
- 박기백. 2002. “기금현황과 쟁점.” 『재정포럼 7월호』. 한국조세연구원: 6-20.
- 황윤원·기노진. 1999. “우리나라 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행정논총』 37(2): 223-254.
- 장원중. 1989. “기금의 변칙적 관리운용문제.” 『재정논집』.
- 황성현 외. 1998. 『기금제도의 개혁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유시권. 1991. 『기금의 효율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박종구. 1992. “공공기금제도의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재정논집』 6: 211-234.
- 박태규. 1989. 『국내기금의 운용현황과 운용방안』. 투자금융.
- 전승권. 2002. “기금에 대한 통제와 자율권의 논리.” 『재정포럼』 6월호: 47-72.
- Boardman, Anthony E., and Vining, Aidan R. “Ownership and Performance in Competitive Environments: A Comparison of the Performance of Private, Mixed, and State-Owned Enterprises.” *J. Law and Econ.* 32 (April 1989): 1-33.
- Caves, Douglas W., and Christensen, Laurits R. “The Relative Efficiency of Public and Private Firms in a Competitive Environment: The Case of Canadian Railroads.” *J.P.E.* 88 (October 1980): 958-76.
- Dewenter, Kathryn L., and Malatesta, Paul H. “State-Owned and Privately-Owned Firms: An Empirical Analysis of Profitability, Leverage, and Labor Intensity.” *A.E.R.* (in press).

- Eckel, Catherine; Eckel, Doug; and Singal, Vijay. "Privatization and Efficiency: Industry Effects of the Sale of British Airways." *J. Financial Econ.* 43 (February 1997): 275-98.
- Fama, Eugene F., and Jensen, Michael C.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J. Law and Econ.* 26 (June 1983): 301-25.
- Hart, Oliver D.; Shleifer, Andrei; and Vishny, Robert W. "The Proper Scope of Government: Theory and an Application to Prisons." *Q.J.E.* 112 (November, 1997): 1127-61.
- Karpoff, Jonathan M. "Public versus Private Initiative in Arctic Exploration: The Effects of Incentive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9(February, 2001): 38-78.
- Kole, Stacey R., and Mulherin, J. Harold. "The Government as a Shareholder: A Case from the United States." *J. Law and Econ.* 40 (April 1997): 1-22.
- Meggrinson, William L.; Nash, Robert C.; and van Randenborgh, Matthias. "The Financial and Operating Performance of Newly Privatized Firms: An International Empirical Analysis." *J. Finance* 49 (June 1994): 403-52.
- Meggrinson, William L., and Netter, Jeffrey M. "From State to Market: A Survey of Empirical Studies on Privatization." *J. Econ. Literature* (in press).

<표 1> 우리나라의 기금현황(2002년 3월 현재)

		운영주체	
		직접운영	위탁운영
설치목적	사업성	문화산업진흥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 남북협력기금, 농지관리기금, 보훈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군인복지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정보화촉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여성발전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국민주택기금, 문예진흥기금, 법률구조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사학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연립 금융성	군인연금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 수출보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소관부처	기금	금융성 기금
재정경제부(11)	공공자금관리기금(재정경제부), 대외경제협력기금(재정경제부), 외국환평형기금(재정경제부)	기술신용보증기금(재정경제부), 신용보증기금(재정경제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재정경제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재정경제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재정경제부), 예금보험기금(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2)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교육인적자원부), 사학진흥기금(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1)	남북협력기금(통일부)	
외교통상부(1)		
법무부(1)		
국방부(3)	군인연금기금(국방부), 방위산업육성기금(국방부), 군인복지기금(국방부)	
행정자치부(1)	공무원연금기금(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2)	과학기술진흥기금(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기금(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5)	청소년육성기금(문화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문화관광부), 문화산업진흥기금(문화관광부), 문예진흥기금(문화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문화관광부)	
농림부(4)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림부), 농지관리기금(농림부), 양곡증권정리기금(농림부), 축산발전기금(농림부)	
산업자원부(3)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산업자원부)	수출보험기금(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1)	정보확충기금(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4)	국민연금기금(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보건복지부),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보건복지부)	
환경부(1)	한강수계관리기금(환경부)	
노동부(5)	고용보험기금(노동부), 근로자복지진흥기금(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sup>4)</sup>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노동부)	
여성부(1)	여성발전기금(여성부)	
건설교통부(1)	국민주택기금(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1)		
기획예산처(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1)		부실채권정리기금(금융감독위)
국가보훈처(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국가보훈처), 보훈기금 <sup>5)</sup>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2)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sup>6)</sup>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중소기업청)	
방송위원회(1)	방송발전기금(방송위원회)	
총 55개	45개	10개

		운영주체	
		직접운영	위탁운영
설치목적	사업성	대외경제협력기금(재정경제부) 남북협력기금(통일부) 군인복지기금(국방부) 방위산업육성기금(국방부) 과학기술진흥기금(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기금(과학기술부) 관광진흥개발기금(문화관광부) 문화산업진흥기금(문화관광부) 청소년육성기금(문화관광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림부) 농지관리기금(농림부) 양곡증권정리기금(농림부) 축산발전기금(농림부) 정보화촉진기금(정보통신부) 국민건강증진기금(보건복지부)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보건복지부) 고용보험기금(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sup>4)</sup> (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노동부) 국민주택기금(건설교통부) 보훈기금 <sup>5)</sup> (국가보훈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국가보훈처) 방송발전기금(방송위원회)	사학진흥기금(교육인적자원부) 국민체육진흥기금(문화관광부) 문예진흥기금(문화관광부)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산업자원부) 한강수계관리기금(환경부) 근로자복지진흥기금(노동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sup>6)</sup> (중소기업청)
	연금 금융성	공공자금관리기금(재정경제부) 외국환평형기금(재정경제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재정경제부) 군인연금기금(국방부) 국민연금기금(보건복지부) 여성발전기금(여성부)	기술신용보증기금(재정경제부) 신용보증기금(재정경제부) 예금보험기금(재정경제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재정경제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재정경제부) 공무원연금기금(행정자치부)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교육인적자원부) 수출보험기금(산업자원부) 부실채권정리기금(금융감독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기획예산처)